

2018학년도 1학기 일반전과 시행 안내

■ 전과시행 일정

내 용	일 시	비 고
원서작성 및 전출학과 면접	2018.1.9(화) ~ 1.12(금) 09:30 ~ 16:00 【1.12(금)은 11:30까지】	-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에서 원서 작성 및 출력 후 원서를 지참하여 전출학 과(본인 소속 학과)에 제출 및 면접 실시
전입학과 면접 및 전형료 납부	2018.1.16(화) ~ 1.17(수) 09:30 ~ 16:00	- 전출학과(본인 소속 학과)에서 합격, 선 발된 다음 전형료 납부 후 전입학과에서 면접 실시 - 전형료는 취창업관(B1) 1층 대구은행 납부 - 언어청각치료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공인영어성적(TOEFL, TOEIC, TEPS) 제출 시 가산점 부여
실기고사	2018. 1. 16(화) 10:00	- 예·체능계 학과(전입학과)
합격자 발표	2018. 1. 23(화) 이후	-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재

※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를 원할 경우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전과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을 한 후 전과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생은 전과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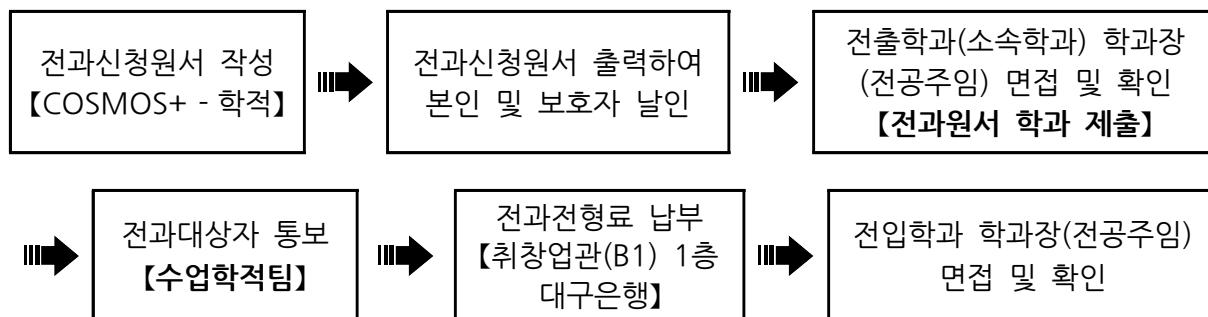
■ 지원자격

- 2학년 이상 진급 대상자. 다만, 타 계열에서 예·체능계열로의 전과는 2학년 진급자에 한하여
허가함.
- 「학칙」 제41조에 명시된 수료학점 기준표(아래)에 따른 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2017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 수료학점 기준표

졸업학점 구분		이 수 학 점		
		2학년 진급 대상자	3학년 진급 대상자	4학년 진급 대상자
120학점인 학과(전공)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30학점인 학과(전공)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40학점인 학과(전공)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60학점인 학과(전공)	4년제	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5년제	3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 지원절차



■ 사정(전형)방법

○ 전출학과(전공)

허용인원	사정(전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 이내로 제한 - 2학년 진급자 : 2017학년도 입학정원 적용 - 3학년 진급자 : 2016학년도 입학정원 적용 - 4학년 진급자 : 2015학년도 입학정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과(전공)에서 정한 기준(면접 등)에 따름.

○ 전입학과(전공)

구 분	사정(전형) 방법
일반 학부 및 학과(전공)로의 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 선발기준은 해당 학과(전공)에서 정한 면접, 성적 등의 심사 기준에 따름. ■ 면접은 A,B,C,D 로 평가, "D"는 불합격 처리함.
예·체능계열 학과(전공)로의 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고사 성적순으로 선발함. - 실기고사 4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는 본교 편입생 선발과 동일한 과제 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제로 함.

■ 전과 전형료

- 일 반 계 : 20,000원
- 예·체능계 : 40,000원

■ 전과 허용 인원 및 제한사항

- 일반학과로의 전과 : 전입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전출의 경우에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함.

예시) ○○○학과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40명, 201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40명인 경우 0000학과 학생 중 1학년 8명, 2학년 8명까지만 타 학과로 전과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학과에서 0000학과로의 전입인원도 1학년 8명, 2학년 8명까지만 허용함.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의 전과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함.
- 신학부, 의예(학)과, 약학부, 간호학과 및 모집이 중지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음.
- 전과는 재학 중 2회까지 허가하며, 편입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사항

-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가 허가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재산정함.
- 장학금 수혜제한 :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제4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사정에서 제외함.
-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017년 1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